

한국발전공사법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4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정혜경 · 윤종오 · 전종덕
손 솔 · 용혜인 · 한창민
이용우 · 송재봉 · 곽상언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특히 발전공기업 간 경쟁 체제는 석탄 연료 구매비 상승 등 비용 증가를 낳았고, 김용균 ·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음.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사실상 민간에 개방 ·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2023년 기준 태양광 98%, 풍력 91%가 민간 소유 상태에 이르렀음. 이는 ‘바람과 태양’이라는 공공재의 이익이 민간 및 해외 자본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 역시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

한편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발전

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경우, 석탄발전 자산을 보유한 발전공기업은 ‘좌초기업화’되는 반면, 신규 LNG 및 재생에너지 설비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 발전산업 민영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큼. 동시에 석탄발전 축소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의 대규모 고용 불안도 불가피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5개사를 통합한 공공 소유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의 고용 승계 및 전환 보장, 대규모 공적 투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안 제1조 및 제5조).
- 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환경보호, 인권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을 수행하도록 공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공사의 임원 구성에 노동자 대표와 시민사회 및 지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전력자원 개발, 발전사업,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연구·기술 개발, 투자 및 해외사업 등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출

자·차입·사채 발행·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7조).

바. 공사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음부즈만 제도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를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국발전공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발전공사의 책무) ① 한국발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의로운 전환과 화석연료 발전노동자의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④ 공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기존 발전사업을 시행할 때에 송배전망 계획 및 천연가스 수급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발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중 각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 대표(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단체, 발전설비가 입지한 지역 주민 대표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한 공공협력 주체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

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14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6. 자산운용수익금
7.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발전사업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제16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2조제3호마목의 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의 각 호의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된 시점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석탄화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이하 “석탄화력발전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노동자
2. 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② 제1항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민간위탁 업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한다. 공사는 지역의 전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고용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행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제1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보장) ① 공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사업의 사전 기획부터 수행, 사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계획, 현황, 평가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계획, 현황, 평가

3. 재생에너지 및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현황, 평가

4. 제17조상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계획, 현황, 평가

5. 그 밖에 공사의 사업과 활동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장은 공사가 제2조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의 적발과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ombudsman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옴부즈만은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설립위원회 설치) ①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이하 “5개 발전공기업”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사설립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발전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2. 각 5개 발전공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5인과 자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5인
3. 각 5개 발전공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5인과 자회사 노동자

를 대표하는 사람 5인

4.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인

5. 기후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인

③ 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공사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5개 발전공기업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5개 발전공기업은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따른 처분과 절차 등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5개 발전공기업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사업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5개 발전공기업은 해당 민간위탁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②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의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정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5개 발전공기업이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